매전면 공고 제2026-20호

「하천법」 위반에 따른 2차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

「하천법」 제33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자에게 「하천법」제69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제1항에 따라 2차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,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4일

매 전 면 장

1. 공고내용 : 「하천법」 위반에 따른 2차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6. 11. 24.(화) ~ 2026. 12. 23.(수) (30일)
3. 공고장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, 인터넷 홈페이지
4. 법적근거 : 「하천법」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 및 같은 법 제69조(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)
5. 무단점유 현황

재산의 표시		무단점유 현황			비고
소재지	번지	행위자	주소	점유내용	
청도군 매전면	당호리 467-1	미상	미상	불법 가설건축물(텐트) 방치 및 불법 경작	

6. 공시송달 내용
   -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,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 관련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,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   - 「행정절차법」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.
7. 기타 궁금한 사항은 **청도군 매전면 산업팀**(☎054-370-26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